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만나 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교육부 등 2개 기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및 국방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 ~ 8. .)

대통령령 제 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2항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미
성년자이거나”로 한다.

제2조(「예비군법 시행령」의 개정)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를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자가 「 <u>청소년보호법</u> 」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u>미성년자이거나</u> -----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u>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u>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① ----- ----- ----- <u>선</u> <u>발예정일을 기준으로</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386
국방부 동원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206